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설명회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2023. 5. 25.



목 차

- 1. 계약학과 개요
- 2.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배경
- 4.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방향
- 5.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 6. Q&A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 정의 및 근거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 및 운영 근거

- 1.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 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
- 4.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설치 주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설치 장소

대학 내 설치가 원칙이며 이동 수업 병행 가능

학사운영

출석수업의 비중

50% 이상 출석수업 실시 (학점 기준)

학생정원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20/100(첨단산업분야 50/100 가능) 재교육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20/100(교육부장관 인정시 50/100) 계약정원: 기존의 첨단산업분야 학과·학부 입학 정원 중 일부 + 입학 정원 20/100

산업체 경력 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 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 관련 법령 체계도(산학협력법)*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u>"</u> 일부개정]

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2.] [교육부령 제300호, 2023. 4. 12<u>"</u>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3. 5. 22.] [고시 제2023-17호, 2023.5.22., 전부개정]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2. 1. 1.]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타법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 일부 수정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 관련 법령 체계도(고등교육법)*

법률 고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시행 2023. 2. 3.] [고시 제2023-6호, 2023. 2. 3, 일부개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4호, 2019. 6. 11<u>,,</u> 일부개정]

(훈령)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2. 15.] [교육부훈령 제367호, 2021. 2. 15, 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 일부 수정



계약학과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

-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 첨단산업분야 학생정원 제한 확대



계약학과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

-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수 있다. <신설 2023. 3. 28.>
- * 첨단산업분야 산업체 부담금 완화



계약학과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3. 28.>

* 학생 납부금 상한 준수



계약학과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8조의2 (계약정원의 운영)

- ①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3. 28.]

* 계약정원 관련 신설



추진 배경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은 교육부에서 2018년 7월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 계약학과 관련「산학협력법 시행령」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조문 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본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또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계약학과 업무매뉴얼」과 「질의응답집」을 함께 제공 예정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23-17호, 2023.5.22. 전부 개정, 시행 2023.5.22



설치 ·운영 규정 개정 개선 방향

- 교육부 계약학과는 제도 도입 성장 발전 시기를 거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제도로 자리매김함
-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성장지원하기 위한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계약학과 제도 개선
- 산업교육기관 스스로 계약학과 운영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설치운영 개정안이
 대학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지원
 - 1.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 산업기술 발전 동향에 맞춘 제도 개선

3. 산업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부과

4. 체계적이고 명확한 설치운영관리 정보 제공



계약학과 정의에 계약정원 포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

*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맞춘 규정 개정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위한 복수의 모체학과 지정요건

제2조 (용어의 정의)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 발전 동향에 맞춘 규정 개정



계약학과 유형에 따른 권역 구분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3. "권역" 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채용조건형은 권역제한 없음



계약학과 유형에 따른 권역 구분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 권역 확대 및 제한 완화(수도권 비첨단분야를 제외하고 전국이 동일 권역)



원격수업의 정의에 대해 관련 훈령 준용

제2조 (용어의 정의)

4. "원격수업"이란「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97호)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



산업체 등의 범위 구분

제3조 (산업체 등의 범위)

-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계약주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준용하여 용어 통일 (예 :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이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
- 2. 제14조제4항에 의한 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승인
- 3.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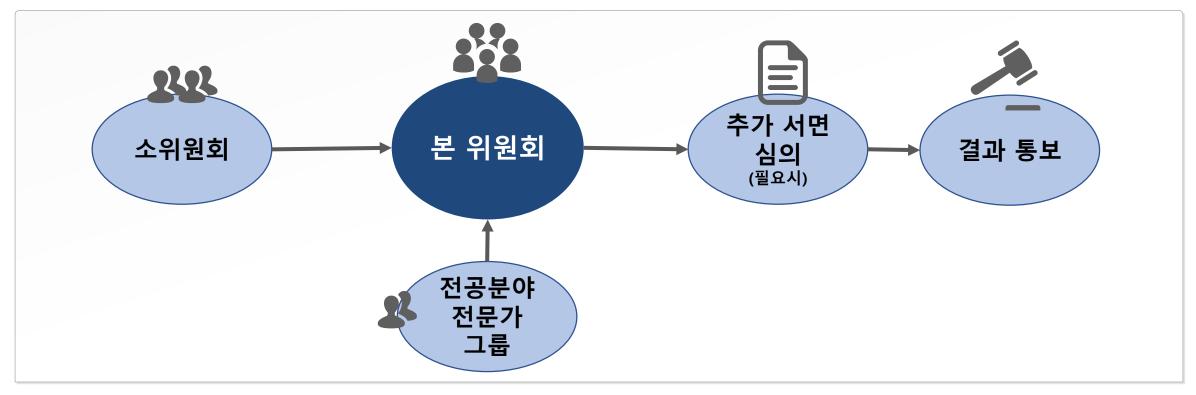
4. 제15조제2항 이동수업의 승인

* 산업 및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이동수업의 대학 자율 운영 결정)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제8조 (소위원회 운영 구성) 신설*



* 심의 절차 개선, 공정성 강화, 심의 자료 보강 및 소명 기회 확대,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



계약학과 설치 요건 및 절차 명료화

제9조 (설치요건 등)

-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설치, 운영, 폐지계획 신고 절차 구분

제10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및 폐지 계획 신고)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수정

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 단체의 구체화

제12조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자체점검 결과보고 제출 규정 유지

제13조 (자체 점검 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 운영 현황 파악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기존 규정 유지



입학자격 구체화를 통한 규제 완화

제14조 (입학자격)

-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1. 전문학사학위과정
 - 2. 학사학위과정
- * 입학자격을 고등교육법 제33조와 일치시키고 대학원 이상 계약학과 입학 기준 명료화



입학자격 구체화

제14조 (입학자격)

- 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 ⑥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대표자의 입학자격 구체적 명시



학생정원 조문 구체화

제15조 (학생정원)

- ① 영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 ② 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학생선발 조문 구체화

제16조 (학생선발)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출석수업 비중과 원격대학의 수업 구체화

제17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5 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 어야 한다.



혼합형 학생 신분 유지 조항 신설 → 제25조와 제26조

제18조 (혼합형 교육과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본 조 이하 '채용약정기관'이라 한다)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원격 수업 범위 확대

제19조 (원격 수업)*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 * 규제 개선 차원에서 원격수업 이수 20% 제한 규정 삭제,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관련「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97호)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
- 100% 온라인 학위과정의 경우 동 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 필요
- 기존 운영규정에서 2항부터 7항까지의 학점당 이수시간, 수업일수, 콘텐츠 진행시간, 원격수업 출석인정기준, 성적평가, 원격평가, 콘텐츠 수정 여부 조항 삭제



대학의 이동 수업 자율 운영 허용

제20조 (이동 수업)*

-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이동 수업 교육부 승인 내용 삭제, 이동 수업 자율 운영 허용



이동 수업 자율 운영 허용

제20조 (이동 수업)*

-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 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대학 자율적 수업의 질 관리로 변경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춘 조문 수정

제21조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관된 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수정



현장훈련수업의 질관리 규정 강화

제21조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 ②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 2. 현장훈련 교육계획
-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 4.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 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현장훈련수업의 품질 유지



계약학과 폐지에 대한 조문은 현행 유지

제25조 (계약학과 폐지 등)

-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 ④ 상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학생의 퇴직에 대한 근거 조문 명확화

제26조 (퇴직)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학생의 퇴직에 대한 근거 조문 명확화 및 신설

제26조 (퇴직)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학생의 퇴직에 대한 근거 조문 명확화 및 신설(계속)

제26조 (퇴직)

- ⑥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 ⑦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계약학과 운영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반영

제29조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 2. 28., 일부개정] 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에 대한 세액공 제 내용 반영



계약학과 설치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관련)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아래의 3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차)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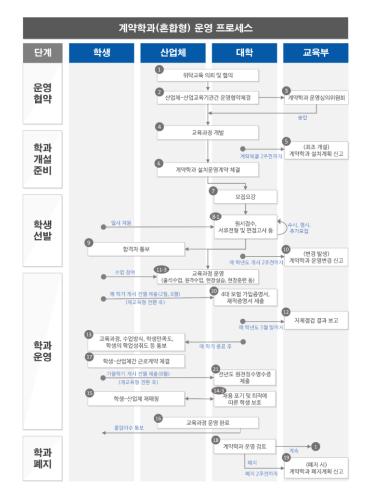
-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 채용조건형 정원 : 20% → 일반분야 20% 또는 첨단분야 50%
- ** 산업체 부담비율 완화: 50% 이상 → 비수도권 첨단분야 채용조건형에 한해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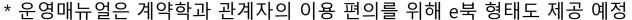


기타

개정안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 매뉴얼* 및 질의응답집 제공 예정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본 설명회 자료는 교육부가 2023년 5월 22일 개정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